

石油事業法施行令改正의 背景과 내용



柳 昌 茂

〈動力資源部 油政課・行政事務官〉

1. 改正의 背景

政府는 지난 8月7日字로 石油事業法施行令을 改正 公布하였다(大統領令 第10880号). 改正의 背景과 主要內容을 간략하게 説明하여 보겠다.

금년 3月11日 石油製品価格調整時 政府는 第2次 石油波動에 따른 国際原油価의 多元化現像에 対処하기 위하여 實施하여 오던 原油価平準化制度를 폐지함으로써 原油費部門에 競争原理를 도입하였다. 이는 작년 10月29日 第61次 OPEC(石油輸出國機構)總會의 原油価單一化 合意 및 国際原油事情의 安定勢를 감안하여 取하여진 조치였다.

原油価平準化制度가 폐지되자 各精油社는 당연히 값싼 原油를 도입하기 위하여 努力하게 되었으며, 이는 国内油価의 安定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값싼 原油를 選好하다 보니 精油社들은 輸送거리가 멀고 価格이多少 비싼 中南美나 아프리카產原油의 使用을 기피하는 현상이 發生하였다. 이는 政府가 石油의 安定的인 需給基盤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原油導入先多邊化政策에 차질을 초래하는 問題가 아닐 수 없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対한 対策을 講究하였으며, 導入先多邊化를 더욱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輸入原油에 대해서만 石油事業基金을 徵収하여 오고 있었는데 이는 輸入石油製品과 国内石油製品의 価格格差를 深化시키게 되어 實需要者들이 값이 싼 石油製品을 직접 輸入하겠다는 壓力を 加重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만약 實需要者들이 값이多少 싸다고 하여 外國石油製品을 直接 사서 쓴다면 国内精油社는 그 存立基盤이 약화될 것이다. 이는 결국 石油의 安定需給을 沮害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石油製품을 輸入하는 경우에도 石油事業基金을 徵収함으로써 原油輸入과 石油製品輸入間의 균형을 유지시켜줄 必要性이 있었던 것이다.

당초에는 이상과 같은 理由에서 施行令改正을 추진하였으나, 改正作業을 하는 過程에서 其他 未備點들도 발견되어 예상보다 비교적 많은 부분을 修正하게 되었다.

2. 主要 改正內容

改正의 주요내용을 條文順대로 整理하고 그 理由를 설명해 나가겠다.

가. 石油精製施設 改造許可對象縮少(第7條)

法第7條의 규정에 따라 石油精製業者가 石

油精製施設을 新設·增設 또는 改造하는 경우 動力資源部長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改造의 경우는 施行令이 정하는 重要施設을 改造하는 경우만 허가를 받게 되어 있다.

작년 12月31日 施行令改正時 1日 2,000 배럴 이하의 윤활유, 아스팔트 또는 용제를 生產하는 石油精製業은 許可對象에서 제외하였다 바, 主로 윤활유生產에 使用되는 탈납施設과 윤활유混合施設이 改造許可對象施設로 구정되어 있는 모순이 今番施行令改正作業時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번에 위의 두가지 施設을 改造許可對象에서 제외하였다.

나. 石油事業基金을 조성하기 위한 收入金 徵收對象者 調整(第9條의3)

從前에 原油를 輸入하는 경우에만 收入金을 徵收해온데 대한 문제점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따라서 이번에 石油製品을 輸入하는 경우에도 收入金을 徵收하도록 收入金의 徵收對象者를 原油輸入業者에서 石油輸入業者로 개정되었다. 여기서 石油分野에 從事하지 않는 많은 분들이 疑問을 표시한 것이 原油와 石油가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이었다. 石油事業法 第2條를 보면, “石油”는 原油 天然가스 및 石油製品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고, 石油製品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즉 石油는 原油와 石油製品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石油輸入業者에는 原油輸入業者뿐만 아니라 石油製品輸入業者도 포함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收入金을 徵收하지 않는例外를 두고 있는 바, 우선 韓国石油開發公社의 備蓄用으로 石油를 輸入하는者로 제외시킨 것은 從前과 다름이 없으나 石油製品輸入이 收入金徵收對象이 됨에 따라例外條項이 신설되었다.

즉 潤滑油 또는 潤滑油基油는 政府의 價格告示對象品目이 아니며, 현재 高率의 関稅가 있는 点을 참작하여 收入金徵收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나프타는 石油化學工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외하였다.

또한 항공기나 선박의 燃料用으로 外國에서 注油하여 輸入이 되는 경우는 同輸入의 不可避

性 및 收入金徵收業務의 번잡성을 고려하여 徵收對象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그러나 韓国石油開發公社가 備蓄用으로 輸入하여 一定期間 備蓄한 후 이를 販売하는 경우 收入金을 納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이번 施行令 改正에서는 이를 明文化하였다 (第9條 3第2項).

다. 收入金의 徵收額決定規定改正(第9條의4 第2項 및 第3項)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石油事業基金은 그用途에 따라 備蓄基金과 安定基金으로 区分하고 있다 (第9條의 4第1項). 또한 이를 造成하기 위한 收入金도 安定基金을 造成하기 위한 收入金은 導入原油 1배럴당 3.50달러 범위내에서 動力資源部長官이 經濟企劃院長官과 協議하여 告示하는 金額을 徵收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現在는 70센트), 備蓄基金을 造成하기 위한 收入金으로는 1.50달러를 徵收하였다.

이번 施行令改正時에는 備蓄基金을 造成하기 위하여 徵收하는 收入金도 1.50달러 범위내에서 動力資源部長官이 經濟企劃院長官과 協議하여 告示하는 金額을 徵收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經濟與件의 变化에 따라伸縮性있게 徵收金額을 調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改正된 施行令에는 從前에 보지 못했던 生소한 用語가 등장하였다. 즉 “備蓄基金을 造成하기 위한 收入金” “安定基金을 造成하기 위한 收入金”이라는 말이 그것이다. 이는 施行令改正案을 法制處에서 審查하는 과정에서 “基金이라는 것은 일정한 收入金이 모아져서 이루어진 結果이자 基金 자체를 徵收한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 의견이 타당한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用語를 施行令에反映한 것이다. 또한 收入金을 原油의 종류나 質에 따른 다른 比例値를 부여하여 徵收 할 수 있도록 하였다 (同條 第4項).

라. 收入金의 納付時期에 관한 規定改正(第9條의4 第5項)

從前 施行令에 收入金은 原油의 船積日로부터 30日以内에 去來外國換銀行에 納付하도록 되어

□ 政策論壇 □

있었고, 다만 輸入負担金과의 差額만 그 原油輸入承認時 輸入承認銀行에 納付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輸入負担金과의 差額을 꼭 輸入承認時 輸入承認銀行에 납부하도록 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基金管理業務만 複雜하게 하는 폐단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에 輸入負担金과의 差額도 船積後 30日以內에 去來外國換銀行에 납부하도록 하여 收入金 納付창구를 一元化하여 納付者の 便宜와 基金管理業務의 간소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韓國石油開發公社가 비축하였던 石油를 石油精製業者나 実需要者에게 販売하는 경우 從前施行令에 收入金의 納付方法等에 관한 규정이 없어 混線이 있었던 点을 감안하여 그 때는 韓國石油開發公社가 売買契約締結後 10日 以內에 去來外國換銀行에 收入金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마. 石油製品의 受託精製輸出을 促進하기 위한 規定補完(第9條의4 第7項, 第8項)

지난번 施行令改正時에 石油製品을 輸出할 것을 조건으로 原油를 도입하고 輸出을 하는 경우에는 輸出된 石油製品生產에 所要된 原油에 대하여는 일단 徵收하였던 收入金을 還給하도록 하는 규정을 新設하였다.

그러나 일단 收入金을 納付한 後 還給을 받도록 規定되어 있었기 때문에 還給되기 까지의 金融費負擔等의 문제가 있었다. 즉 受託精製輸出에 따른 加工料(約 1 달러/배럴)에 비하여 위의 金融費負擔은 過重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에 金融費負擔을 緩和해 줌으로써 현재 過多한 剩餘精製施設을 보유하고 있는 精油社들이 剩餘施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講究하게 되었다.

檢討過程에서 일단 徵收하였던 收入金을 還給하여 줄때 利子를 加算하여 주는 방안도 생각하였으나, 收入金의 徵收를 유예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으로 提示되었다.

受託精製輸出用으로 輸入하는 原油에 대하여는 同原油船積後 90日까지 收入金의 徵收를 유예하되 輸出이 履行되지 못한 石油에 대한 收入金은 이를 그 다음날 納付하도록 하였다. 또한

收入金 納付後 다시 輸出이 履行되는 경우에 그 輸出石油製品生產에 所要된 原油에 대한 收入金은 다시 還給을 해 주도록 하였다. 즉 收入金의 徵收유예와 還給制度를 동시에 採択한 것이다.

다만 이번 施行令에서는 上記의 정수유에 및 還給의 혜택을 도입된 原油中에서 생산된 石油製品의 50% 以上을 輸出하는 경우에 한하여 賦與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受託精製輸出을 하는 精油社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国내에 많은 物量을 搬入하는 경우 国内需給에 混亂을 招來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向後 石油製品의 受託精製輸出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生產된 石油製品의 50% 以上을 輸出하도록 委託者와 契約을 체결해야 할 것이며, 그 契約을 꼭 履行해야 할 것이다.

마. 原油導入先의 多邊化를 促進하기 위한 支援強化(第9條 5 第2項 第3号)

原油導入先多邊化에 관해서는 앞서도 言及한 바 있지만, 從前에는 原油導入先多邊化地域으로부터 原油를 도입함에 있어 輸送거리의 差이에 따른 追加運送費만 補填해 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追加運送費外에 追加金融費 및 輸入장려금도 지급할 수 있는 根據를 마련하였다.

輸送거리가 먼 경우에 輸送費가 더 소요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輸送期間도 길어지게 되어 原油를 輸入精製하여 製品으로 판매하는 것도 그만큼 늦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販売代金의回收期間이 길어지게 되어 金融費가 더 들 수밖에 없다. 여기서 追加運送費, 金融費의 補填基準은 中東地域으로부터 導入하는 데 소요되는 費用이 되고 있다.

또한 輸入장려금은 多邊化地域의 產油國이 地리적 조건에 따라 原油價格를 決定하거나 原油의 質에 따른 價格과 国内 石油製品價格構造의 差異 현상에서 오는 損失을 補填해 주기 위한 것이다.

追加運送費, 金融費支援만으로는 위와 같은理由 때문에 多邊化推進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輸入장려금을 支給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물론 国内 油種間 價格構造를 國際價格構造와 接近시킨다면 장려금을 별도 支給할 필요성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政策의 배려에 따라 결정된 国内價格構造를 短期間內에 國際價格構造에 接近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国内油價構造를 合理化시키는 것은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라 생각된다.

3. 맷는 말

以上에서 금번 施行令改正의 主要內容을 간략하게 나마 說明하였다. 関聯되는 모든 분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

작년 12月31日 施行令을 개정한 지 不過 7個月만에 施行令을 다시 개정하였다. 무슨 法令을 그렇게 자꾸 바꾸느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法令은 安定性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래야

만 국민이 그 法令을 信賴하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法에 관한 가장 基本的인 常識인 것이다.

그러나 法의 安定性 못지 않게 重要한 것은 法의 伸縮性 内지 融通性인 것이다. 法令의 安定性만을 重視한 나머지 社會的 여건이나 經濟的 與件의 변화에 따라 法令을 改正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法令은 諸般與件과 脫離되어 死文化되고 말 것이다.

특히 石油事業은 國際石油事情의 변화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石油事業에 관한 法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變化에 對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法令의 安定性과 伸縮性을 調和시켜 나가는 것이 法令을 運用해 나가는 過程에서 어려운 課題이기는 하겠지만,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 생각된다.

앞으로 石油事業 法令도 그러한 方向으로 運用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新刊紹介=

82年 石油年報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各種 石油資料를 집대성한 82년판 世油年報가 나왔다.

大韓石油協會弘報室이 발행한 이 年報는 신국판 총 6백 46페이지로 81년의 國內外 石油動向, 石油政策을 비롯하여 石油產業, 石油資料 및 統計 등 6부분으로 엮어져 있다.

또 紀元前으로 부터 최근까지의 世界

石油史 年表를 비롯하여 부록으로 石油 入門을 실어 초보자가 석유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특히 이 年報는 統計부문에서 국내에서 수집할 수 있는 한 많은 수의 石油統計를 모아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배려했다.